

취·창업 운영위원회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3.9		16		
2	2025.8.13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취·창업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취·창업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기)

① 위원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3.9., 2025.8.13.>

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조 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4조 (기능) 취·창업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국가직 지역인재를 포함한 각종 추천대상자 선발 등 각종 취업관련사항
- ② 전문자격시험 준비반 장학생 선발관련 사항
- ③ 취업동아리 선발 및 기타 취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
- ④ 창업지원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⑤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제5조 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<개정 2020.3.9>

제6조 (회의록 및 간사)

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학생경력개발팀장 간사로 둔다. <개정 2020.3.9>

제7조 (회의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